

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(제16조 관련)

장부 및 서류명	서식	보존기간
1. 원칙(학원만 해당한다)		준영구
2.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명서(학원만 해당한다)	별지 제3호서식	준영구
3. 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증명서(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17호서식	준영구
4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(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)	별지 제22호의2 서식	준영구
5.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	5년
6.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	별지 제24호서식	5년
7. 수강생 대장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25호서식	3년
8. 직원 명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26호서식	계속
9. 삭제 <2019. 1. 10.>		